

서 약 서

1. 성 명 :
2. 생년월일 :
3. 주 소 :

본인은 「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의한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님을 확인하며, 신청서 상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에는 「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0조(위원의 해촉)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주민자치위원 해촉 처분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지원자 성명 (서명)

남동구 만수2동장 귀하